

# 최근 환경분쟁의 가축피해 실태, 사례 및 구제방안(Ⅱ)

〈전 호에 이어〉

류일선 연구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5. 닭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닭 등의 조류는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민감한 것으로 있으나, 돌연적인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 불안상태가 증폭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닭의 경우 90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초기 2~3분간은 약간 긴장하거나 놀라는 경향이 있으나, 잠시 후 진정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간다.

일반적인 도로교통소음에 노출시에는 비교적 잘 견디는 경향치를 보인다.

표 6. 타조의 품종 및 특성

구분	Red Neck Ostrich(레드종)		Blue Neck Ostrich(블루종)		African Black Ostrich(블랙종)	
신장(m)	2.7		2.7		2.4	
평균체중	암	수	암	수	암	수
	110~125	135~160	110~125	135~155	110~125	110~125
성타조성숙지점/년	3~4	4	3	3~4	1.3~1.8	2.1~2.5
가죽면적(Square/Feet)	14~16		14~16		12~14	
가죽가격(Us \$/SF)	15~20		15~20		14~22	
깃털품질	양호		보통		우수	
성질 정도	매우 사나움		비교적 사나움		온순한 편임	
연간 산란수(개)	20~30		20~40		40~60	
기타	다양한 피부색과 발이크고 털은 빈약하다.		푸른빛과 회색빛의 피부와 털이 짧고 빈약하다.		푸른회색빛과 두껍고 긴 목털, 작은 발	

주(註) : 하와이 타조농장 홈페이지(<http://www.hawaitaj.co.kr/tajokind.htm>)

닭은 급하고 쉽게 놀라며 적은 상처에도 쉽게 사망하는 예가 많으며, 순간적으로 놀라면 심박동이 2배로 증가하고 심하면 장파열로 폐사할 수가 있고, 또한 장기간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이상란의 생산, 사료섭취량감소, 발육속도 저하 및 산란율의 감소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반면에 제임스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닭은 100 dB(A)이내의 항공기 소음에는 심박동수 약간변화, 115dB(A)에서 알을 거의 품지 못하고, 120dB(A)에서는 부화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음압레벨이 95dB(A)이내의 백색잡음을 소음원일 경우 체중, 식욕, 행동, 백혈구내의 임파구변화 등에 평가한 결과 거의 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988, Poultry Science).

닭 사육관리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경북 ○○군 고속철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2004), 일반적으로 병아리, 육성추(중병아리)사육시기는, 이 농장의 경우 한곳으로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 칸막이 등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식이나 폐쇄식 계사 등을 이용하여 사육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병아리의 육성시기의 사육밀도는 3.3㎡(1평당) 약 20~24수를 수용사육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재래닭 기르기 90p; 농촌진흥청 발행, 2001).

### 6. 타조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타조는 달리는 가금류(走禽類)로 날지 못하며, 지구상의 조류중 가장 크고 무겁고 시력이 대단히 좋아 3.5km까지 구별이 가능하며, 청력이 발달되어 있으나, 후각과 미각은 둔하다.

특성상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놀라서 떨 수

있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폐사, 산란율감소, 수정율 감소, 설사 탈장 및 외상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어린 타조(1~3개월)의 경우는 온도, 위생, 환기 등의 각종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관리와 기생충구제가 요구된다. 타조의 경우, 아직까지 가축화가 덜 된 야생조류로서 소음 등에 집단적으로 놀라는 등의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산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 ■ 타조의 일반적인 주요 특징

- 체중 : 110~150kg
- 산란수(블랙중 기준) : 40~80개/년(평균 60개)
- 산란기간 : 2~10월(4~8개월)
- 산란시기 : 생후 18~24개월
- 산란특성 : 2일에 1개씩 산란

### 7. 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개의 청각은 사람의 16배로 소음이나 진동 등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물려다니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소음·진동 등에 의한 외부자극에 민감한 반응 및 성장지연을 나타내고, 특히 개의 번식장애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절번식을 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로서 봄철은 3~5월, 가을철은 9~11월의 기간중 번식이 이루어져 60일후에 출산하게 되는 데, 그 유형은 수태율저하, 산자수감소 및 유·사산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8. 사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사슴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

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국내에서 사육중인 사슴 대형종인 엘크의 경우 사슴뿔이 처음 자라는 시기는 2월하순부터 4월중순에 걸쳐 낙각이 일어난 후이며, 뿔이 자라는 기간은  $89 \pm 3.5 \sim 89 \pm 4.0$ 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2004년도 축산시험연구보고서 참조).

사슴은 다른 가축처럼 연중 어느때나 발정이 와서 임신이 되고, 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발정은 일장(日長)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며, 수컷 역시 일장의 변화에 따라 번식계절이 시작되는 독특한 번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슴은 계절번식을 하는 동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인 가을에 번식계절이 시작되는 단일성 동물이다.

번식적기는 사슴은 조숙성(早熟性)으로 이른 봄에 분만된 새끼사슴이 그해 늦은 가을에 발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성숙이 완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대체로 생후 1년에서 1년6개월이 지나야 번식에 이용할 수가 있다.

암사슴의 번식최성기는 4~6세이나 6~8세까지도 번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혈통이 좋거나 능력이 우수하면 10세까지도 번식을 할 수 있고 수사슴은 1년 6개월부터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종록은 3세 이상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5세가 최적기이다.

번식계절은 계절적 다발정성 번식동물인 사슴의 뇌하수체가 유기됨으로써 발정이 시작되며, 사

슴은 단일성 동물로서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시기가 번식계절이고, 번식계절은 일광, 기온, 사슴의 사료공급과 영양상태, 신경자극 및 기타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모든 사슴이 8월하순부터 12월 사이에 발정이 오며, 꽃사슴은 10월부터 12월사이에 교배를 하며 보통 6~7월에 분만한다.

#### 9. 어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물고기의 경우, 음향은 물속에서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류들은 청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높은 소음 즉 180여 dB(A)에 노출될 경우, 금붕어 등은 청각기관의 완전파괴로 뇌내 중추신경에 전달되는 음향신호가 비존재하게 되어 중요한 감각기능의 마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2,000여종의 빠있는 물고기에서 내이(內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0dB(A)보다 낮은 소음원에 노출될 경우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에 대하여 60dB(A)의 환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 10. 악취·유해가스가 사슴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일반적으로 가축에 있어 축사내 높은 습도와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같은 심한 악취가 발생시는 기관지폐렴, 폐렴 등의 호흡기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소, 면양, 염소 등)이 조사료인 건초, 풀 등을 먹게 되면 제 1위에서 1차로 소화를 한 다음 되새김질(반추)하여 수축

표 7. 주파수 및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적용 소음도		노출 시간 (단위:시간)	피해 양상	비고
주파수 대역 Hz	소음도 dB(A)			
250~500	180~200	2	1/3폐사, 2/3는 균형감각상실	소리에 민감한 특성
300 500 800 1,000	149	일시	- 24시간후 정상상태로 복귀 - 24시간후 정상상태로 복귀	

성이 강한 제 2위로 보내어지게 되는 데, 만약 비닐 등과 같은 비소화성물질을 다량 먹게 되면 제 1위내에 장시간 정체를 하여 이물덩어리(식괴=食塊, bolus)형성, 위 무력증, 소화장애와 고창증 등이 발생하여 식욕부진 및 절폐를 일으키거나 폐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 III. 가축피해액 산정에 따른 조사절차

#### 1. 피해규모 산정기준

##### ■ 축종

- 소(젓소, 한우, 교잡종, 육우: 헤어포드, 앵거스, 샤로레 등)
- 돼지(랜드레이스, 대요크셔, 햄프셔, 듀록종, 재래종:재래돼지 등)
- 닭(산란계 : 레그혼 등, 육계, 종계 등)
- 염소(유산양, 흑염소)
- 양(면양)
- 토끼(식용토:캘리포니아종, 뉴질랜드화이트종, 앙고라종 등, 애완종)
- 사슴(엘크:대형종, 레드디어:중형종, 꽃사슴:소형종)

- 개(육용견, 애완용 등)
- 오리(청수, 체체베리, 북경, 캠블 등)
- 칠면조(청동색종, 백색종)
- 관상조류(금정조, 금화조, 구관조, 문조, 십자매, 앵무, 호금조 등)
- 꿩(금계, 은계, 금은계, 백관 등)
- 메추리
- 타조

##### ■ 피해대상 두수

- 전체 사육두수(자, 육성, 성축)
- 소(비육/착유/번식), 돼지(번식/비육), 닭(육용/산란), 기타(육용/산란)

##### ■ 피해유형 I

- 유산, 조산, 사산
  - 정상분만과 이유후(젓소:초유떼기, 한우:젓떼기 등)
  - 출하시의 정상가격(자연발생분의 이상산 제외)
- 폐사
  - 폐사당시의 연·월령, 산차, 생산능력 등을 고려 당시 정상가격(자연발생분 제외)

- 도태
  - 도태당시 정상 생산 능력 보유축  
가격과 도태 가격과의 차(자연발  
생분 제외)
- 번식장애
  - 치료비용
  - 공태기 연장에 의한 소득감소분  
(자축손실, 유대감소 등, 자연발  
생분 제외)
- 피해유형 II
  - 소
    - 성장지연
    - 유량감소
    - 유질·육질저하
    - 치료비용액 등
  - 돼지
    - 산자수 감소
    - 이유자돈수 감소
    - 출하돈수 감소
    - 출하일령 증가 등
  - 닭
    - 성장지연
    - 산란율 감소
    - 이상란율 증가
    - 약품비 증가 등
  - 개, 곰, 염소 : 성장지연 등
  - 사슴 : 녹용생산성 감소 등
  - 기타 가축 : 산란율 감소 등
- 증거 및 참고자료(축산물 피해의 경우)
  -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 동물사육장 평면도
- 피해현황 자료
-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진료기록  
부 및 폐수 검안(폐사진단서, 사산 증  
명서 등
- 소(젖소) : 우유 생산량, 세균수 및 체세  
포수 등급내역(농협발행의 우군검정성  
적표와 서울우유발행의 유질향상지도  
대장, 유대계산서 및 납유실적증명서,  
집유전표, 체세포관리통지서) 등
- 소(한우, 젖소 등) : ○○가축인공수정  
소 및 ○○동물병원 발행의 정액(난자)  
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 등
- 돼지 : 모든 구입(중돈장발행의 돈 판매  
전표, 중돈 및 후보돈분양확인서), 돼지  
인공수정(정액공급증명서), 전염병검진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등
- 소, 돼지 등 : 도태 내역(○○가축위생  
시험소 발행의 도축검사 증명서, ○○  
축산 발행의 유우매매계약서, 도살진  
단서, 도축사실 확인서와 위탁품대금  
정산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생돈  
정산서, 출하정산서 등
- 사육두수 : 읍·면·동장 발행의 가축  
자가사육사실확인서(원), 다두가축사  
육농가조서, 가축별통계조사집계표와  
축종별 조사집계내역, 한우개량단지의  
경우 혈통등록 우 관리카드, 젖소검정

표 8. 주요 가축피해 조사절차표준 점검항목(Check list)

항 목	목적점검항목(Check list)
축종 및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한우번식, 한우비육, 겸용, 젃소, 젃소비육, 기타)</li> <li>• 돼지(비육전업, 번식전업, 겸용, 기타)</li> <li>• 닭(종계, 산란계, 육계, 오골계, 기타)</li> <li>• 기타(염소, 사슴, 개, 곰, 오리, 기타)</li> </ul>
대상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두수총사육두수 : 두(수)</li> <li>• 번식가능두수 : 두(수)</li> <li>• 육 성 두 수 : 두(수)</li> <li>• 피해범위두수 : 두(수)</li> <li>• 기 타</li> </ul>
근거자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물 근거자료 : 수의사진단서(소견서), 인공수정증명서, 유관기관증명서, 사진, 실물자료, 증언 기타</li> <li>• 수량 및 물량 : 생산 및 판매증명서,약품 및 사료거래대장, 진료비 및 수정료 영수증, 기타</li> </ul>
축산물가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li> <li>• 축산신문 제공가격</li> <li>• 실거래가격</li> </ul>
피해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형 : 유·조산, 사산, 폐사, 압사, 子食症, 도태, 부상</li> <li>• II형 : 성장지연, 유량감소, 유질저하, 육질저하, 산자수 감소, 출하일령연장, 산란율감소, 이상란율증가,(녹용)생산성저하 등</li> </ul>
사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자경험 : 20년이상, 10~20년, 5~10년, 5년이하</li> <li>• 사육자전문성 : 전문적, 중간, 비전문적</li> <li>• 시설 : 자동, 반자동, 재래식</li> <li>• 사육환경 : 양호, 중간, 불량</li> </ul>
사료종류 및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명( ), 급여수준 : 과도, 적정, 미흡</li> <li>• 예방접종명 : ( )</li> <li>• 예방접종수준 : 철저, 중간, 미흡</li> </ul>
질병관리 및 교배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 : 정기검진, 방문요청, 자가진료</li> <li>• 교배형태 : 인공수정, 자가수정, 자연교배</li> </ul>
축산물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구입 : 시장구입, 중간상인구입, 자가번식</li> <li>• 축산물판매 : 농협의뢰, 중간상인매각, 시장매각</li> </ul>
기타사항	

- 기록 등
- 육질저하피해의 경우는 OO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발행의 육질판정내역서
- 임상전문수의사의 번식검진내역, 번식 성적관리 등

#### IV. 환경분쟁시 가축피해항목 및 점검 리스트 (가축피해조사전문가용 : 본인이 사용하는 조사양식임을 밝혀둬)

- 목장주소지 및 목장명
- 사육 축종 및 규모
  - 소(젃소, 한우), 돼지, 닭, 사슴, 오리 등
  - 성( ), 육( ), 자( )
- 피해 목장과 공사장과의 위치 및 이격거리
- 목장개시~현재(역사) :
- 축사형태(폐쇄식, 개방식, 반개방형 등) 및 동수
- 번식형태(인공수정, 자연교배 등)
- 가축의 구입처, 방법 등
- 관리인수 :
- 질병예방 및 치료 방법
- 피해이후 분쟁해결노력(신청인, 피신청인) 등 :

#### V.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실태 및 현황

##### 1.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현황

- 피해원인별 비교를 보면, 처리된 총

1,476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274건(86%), 대기오염 119건(8%), 수질오염 55건(4%), 해양오염 9건(1%), 기타 19건이었다.

- 처리된 1,476건중 정신적피해가 597(40%)로 가장 많고, 건축물+정신적피해가 334건(23%), 축산물피해가 216건(15%), 농작물 피해 85건(6%), 건축물 피해 54건(3%), 수산물피해46건(3%), 기타 144건(10%)순으로 나타났다.

#### VI. 환경분쟁 주요 조정사례(가축피해부분)

##### 1. 건설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 OO 고속철도공사 양계휴업 피해배상  
OO시 OO면의 양계장 주인이 고속철도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2년 동안 양계업을 하지 못한 손해와, 완공 후에도 고속열차 소음 때문에 양계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양계장 이주비용의 지급 등 모두 2억3,86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계휴업피해를 인정하여 6,21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완공 후 열차 소음으로 인한 이전비용은 예측 소음도가 양계에 지장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 OO OO-OO간 도로공사 젃소 피해 배상  
OO군 OO면의 목장 주인이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해 젃소가 죽고, 유

량이 감소하는 피해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용역 비용 등으로 9,233만 4천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와 용역비용의 일부를 인정하여 5,843만 2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사자 심문 과정에서 현장소장은 목장 옆의 도로공

사 구간이 550m(교량 90m 포함)밖에 되지 않는데도 97년7월부터 2001년6월까지 4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22개월이고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목장주인의 항의와 진정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표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현황(오염원인별)단위(건수, %)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기타*
계	1,476(100%)	1,274(86%)	119(8%)	55(4%)	9(1%)	19(1%)
2006. 6	63(100%)	58(92.1%)	3(4.8%)	-	-	2(3.1%)
2005	174(100%)	151(86.8%)	11(6.3%)	5(2.9%)	-	7(4.0%)
2004	223(100%)	206(92.4%)	8(3.6%)	3(1.3%)	1(0.4%)	5(2.3%)
2003	292(100%)	264(90.4%)	19(6.5%)	8(2.7%)	-	1(0.4%)
2002	263(100%)	229(87%)	26(10%)	4(2%)	-	4(2%)
2001	121(100%)	103(85%)	11(9%)	7(6%)	-	-
2000	60(100%)	49(82%)	7(12%)	4(6%)	-	-
1999	79(100%)	67(85%)	8(10%)	4(5%)	-	-
1998	49(100%)	41(84%)	7(14%)	1(2%)	-	-
1997	40(100%)	35(88%)	4(10%)	1(2%)	-	-
1996	35(100%)	33(94%)	1(3%)	-	1(3%)	-
1995	24(100%)	10(42%)	3(13%)	10(42%)	1(4%)	-
1994	19(100%)	11(58%)	5(26%)	1(5%)	2(11%)	-
1993	30(100%)	16(54%)	6(20%)	4(13%)	4(13%)	-
1991~1992	4(100%)	1(25%)	-	3(75%)	-	-

註 :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2006년 6월 현재)

표 10.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현황(오염원인별)단위(건수, %)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기타*
계	631(100%)	542(86%)	49(8%)	22(3%)	-	18(3%)
2005	210	187	8	3	-	12
2004	179	159	9	8	-	3
2003	57	52	-	2	-	3
2002	34	27	6	1	-	-
2001	46	37	6	1	-	-
2000	35	30	5	-	-	-
1999	22	17	4	1	-	-
1998 이전	48	33	11	4	-	-

註 : 2005 지방환경분쟁조정사례집(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刊)

표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신청현황 (단위:건수,%)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피해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수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	기타피해 (영업손실, 지하수오염, 방음시설, 이주비용구등)
계(%)	1,476(100)	597(40)	334(23)	54(3)	<b>216(15)</b>	85(6)	36(2)	10(1)	144(10)
2006. 6	63	26	14	6	<b>5</b>	1	1	-	10
2005	174	72	40	22	<b>10</b>	1	4	-	25
2004	223	107	49	1	<b>33</b>	9	1	1	22
2003	292	149	58	12	<b>18</b>	9	5	-	41
2002	263	121	65	7	<b>42</b>	13	1	-	14
2001	121	36	33	2	<b>26</b>	8	5	-	11
2000	60	16	13	2	<b>15</b>	4	5	-	5
1999	79	19	22	4	<b>23</b>	6	2	-	3
1998	49	14	11	3	<b>11</b>	6	1	-	3
1997	40	21	10	3	<b>3</b>	2	-	-	1
1996	35	12	12	1	<b>7</b>	-	-	1	2
91~95	87	4	7	17	<b>10</b>	13	11	8	7

註 :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2006년 6월 현재)

표 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신청현황 (단위:건수,%)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피해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내륙 수산물 피해	해양 수산물 피해	기타 재산적 피해
계(%)	631(100)	270(43)	137(22)	57(9)	<b>64(10)</b>	53(8)	6(1)	1(-)	43(7)
2005	210	99	51	13	<b>12</b>	17	1	-	17
2004	179	96	39	15	<b>14</b>	6	1	-	8
2003	57	29	11	5	<b>3</b>	4	-	-	5
2002	34	8	11	1	<b>5</b>	5	1	-	3
2001	46	16	9	5	<b>5</b>	8	2	-	1
2000	35	12	10	7	<b>3</b>	2	-	-	1
1999	22	6	-	3	<b>8</b>	3	-	-	2
'98 이전	48	4	6	8	<b>14</b>	8	1	1	6

註 : 2005 지방환경분쟁조정사례집(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귀)

분쟁 발생의 초기에 목장주인의 피해 보상 요구를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느니,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등 원만한 합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게 된 사례이다.

■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소음 등 피해 사건

OO-OO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사육중인 젖소의 유·사산, 폐사, 유량저하, 발육부진,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향후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해 총 343,2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액은 젖소 피해배상액 22,889,430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840,000원, 재정신청경비 71,180원 등 총 23,800,610원으로 한다.

■ 충남 서천군 공주-서천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03.8월부터 '04.7월까지 계속된 피신청인의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농장의 가축(한우 및 돼지)이 유·사산, 조산과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도저히 축산업을 경영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은 농장 1년 소득의 40%인 160,539,284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되,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도, 피해기간, 전문가의견, 관련자료, 관련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피해배상기간은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한 '03.8월부터 신청인이 피해내용을 제출한 '04.11월까지로 한다.

피해 배상액 산정식은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식에 의하고 가축의 가격은 2004년도 평균 산지가격에 의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경기여주군 오학-현암간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타조피해

경기 ○○군 ○○면 ○○리 ○○번지에서 타조를 사육하고 있는 ○○○이 사육장 인근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종자타조 폐사, 부상, 산란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750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389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경남 OO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인근주민 3인이 돼지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시공사에게 피해액 1,445,41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는 도로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해 돼지폐사 등 피해가 인정된 1인에게 피해액 7,081,180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신청인 2인은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상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충남 OO-OO간 고속도로(O공구)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모돈의 유·사산, 양돈장 휴업 피해에 따른 총 피해액 301,799,255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모돈의 유·사산, 자돈의 압·폐사피해부분만 배상을 인정하고, 모돈의 산자수 감소 및 자돈·비육돈의 성장지연피해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배상액은 총 39,620,570원으로 한다
- OO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유·사산 및 위축돈 발생, 무발정증상 등의 양돈피해와 축사이전비용 등 총 226,000,000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모든 도태 및 자돈피해부분만을 인정하여 총 7,133,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OO공항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모돈과 자돈 폐사, 돼지의 유·사산 및 추후 양돈장운영 불가능으로 인한 향후 18년간 폐업보상액을 포함한 2,354,810,960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모돈 도태, 폐사와 자돈 및 발정지연의 피해를 인정하여 총 23,74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OO 군용비행장의 군용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양돈 및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49,000,000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총 15,490,00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 충남 OO시 OO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유·사산 및 도태피해를 입었으며, 시공사인 OO산업(주)에게 총 42,900,000원을 청구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6,174,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OO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모돈의 폐사, 도태 및 유·사산 등, 육성돈의 폐사, 위축돈 및 성장지연, 자돈의 폐사 등의 양돈피해와 돈사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총 983,310,000의 양돈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7,081,1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경기 OO시 고속철도 공사·운영소음·진동으로 인한 임신모돈의 유·사산, 위축자돈의 분만, 번식을 저하, 발정재귀율 증가, 산자수 감소 등의 피해로 소득감소 및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총 866,055,280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산, 산자수감소 비육·육성돈의 피해를 인정하여 총 40,091,46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영천시 도로공사장 소음 등 피해 경북 영천시 주민 4명이 대구-포항간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양봉, 과수, 건물 및 정신

적 피해를 입었다며 LG건설(주)과 대동건설(주)을 상대로 6,547만 7,440원을 배상의 요구하였다.

소음, 먼지로 인한 양봉 및 정신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인정하여 622만 9,0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영덕군 도로공사장 소음 등에 의한 양봉피해

경북 영덕군 주민 13명이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억 3,209만 9,7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봉군피해를 인정하여 1,752만 4,5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 등에 의한 가축피해

경기도 포천군 주민들이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축사 이전비 등 5억 6,475만 6,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977만 9,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예산군 도로공사장 한우피해

신청인은 2002. 6월경부터, 분쟁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500m지점에서 시공되고 있는 00~00간 고속도로건설 공사장(제 8공구)에 필요한 토사(성토재)를 수송하기 위해 인접군도 00호

선을 통행하는 토사반입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가축(한우)의 유·사산(9두), 폐사(8두), 생육부진(6두) 등 총1억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목장용지 이전과 그동안의 한우생산 등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피해는 성장지역, 유·사산, 폐사와 재정신청 경비를 포함한 배상액은 총 20,582,190원으로 한다.

■ 보은 양계장 소음·악취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신청인들은 인근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인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그 피해 배상금으로 164,188천원의 재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의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수질오염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양계장 이전과 물질적·정신적피해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 화성시 도로공사장 젓소 등 피해분쟁 사건

신청인 ○○○등 6명(1세대)은 피신청인들이 '02.11.27일부터 본인들이 운영하는 ○○목장 축사 인근에 국도 ○○호선(평택 ~ 화성, L=29.9km)중 ○○시 ○○면 ○○리~○○시 ○○면 ○○리간(L=8.1km) 국도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고 있는 젓소가 연이어 유·사산, 탈골, 유

방염발생, 광폭, 유량감소 등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공사완료 후에도 축사가 도로와 너무 근접하여 젖소 사육 목장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현지의 목장경영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축사이전 보상비와 그동안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총 1,674,439,000원을 피신청인[서울○○○○○청, (주)○○○○○]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토 ○○호선 도로공사장 건설장비의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을 하고, 진동피해와 그 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축사 이전보상비 및 전기시설 등 기타 피해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배상액은 착유량, 유산, 성우 도태, 진료 및 진단비용, 신청인 가족 소음 정신적 피해와 재정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41,086,892원이 된다.

■ 원주시 도로공사장 어류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우천시 발생하는 황토물이 신청인 낚시터로 유입됨에 따라 낚시터 영업(향어, 잉어, 붕어)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물이 혼탁하여 산소부족으로 어류가 폐사하고 조황이 나빠 왔던 손님도 돌아가면서 식당 영업도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평상시 30~40명씩 낚시를 해

오던 곳이 한여름 성수기에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겨울철 얼음낚시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총 72,171,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황토물의 낚시터내 유입으로 인한 어류폐사 피해 및 낚시터·식당·상회의 영업손실 피해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기 이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족 및 정신적 피해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가족(개)의 유산·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억 8,426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51,691,100원의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나주시 도로공사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전라남도 나주시 ○○면 ○○리 ○구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 경영자 ○○○이 피신청인이 03. 4월부터 ○○~○○간 ○○시 국토 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장비 사용시에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젖소의 유량감소, 유산, 체세포수 증가,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재까지의 젖소피해와 공사종료시까지인 향후 5년간의 젖소피해액(치료비, 약품비 포함)

84,996,000원과 정신적 피해액 5,000,000원 등 89,996,000원을 배상을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의 폐사, 유산, 도태, 유생산 저하 피해, 치료비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고,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먼지로 인한 젖소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목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기간 03. 4. 21일부터 04. 4. 1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생산성 자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기간은 03. 9. 22~03. 10. 21일까지 및 후유 장애기간 30일을 가산하여 60일로 한다.

배상액은유량감소, 모체도태, 유산, 폐사 및 치료약품비와 광주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치료내역만 인정(134만원)하여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주) 대표이사(○○○)는 신청인 000에게 배상하여야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액은 17,711,720원으로 하고, 재정신청 수수료는 피해배상금액을 기준으로 1만원당 30원씩 53,130원을 배상한다. 따라서, 배상하여야 할 총액은 17,764,850원이 된다.

■ 경남 함양군 수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육견 피해

개를 사육하는 신청인들이 2004년5월부터 경남 함양군내 수해복구 수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개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8,2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신청인 2인에게 각 금3,345,500원, 5,037,500원을 배상토록 함.

■ 충남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3공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교잡종(F1)피해

젖소 교잡종(F1)를 사육하는 ○○○가 고속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 교잡종의 번식저하, 유·사산, 성장지연 및 치료약품비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젖소 교잡종 즉 F1 개체별 번식상황은 한우 숫소 1두에 의한 자연종부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록이 전무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에서 발행한 혈청검사 성적서에 의거하면 부루세라병 검진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네오스포라병은 3두가 양성으로 나온 결과로 미루어 이로 인한 유사산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단서 발부 4두중 1두만 인정, 3두 비인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젖소에서 자연유산율이 5~8%

로 인정되는 점과 네오스포라병으로 추정하였음

2.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 ○○ 항공학교 헬기소음 사슴 피해 배상

○○시 ○○면의 사슴목장 주인이 헬기훈련 소음으로 인해 사슴 48마리가 죽고,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목장 이전비용 등으로 7억6,305만 2,5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사슴의 야생습성, 헬기 소음도와 운행 횟수, 수의사 검진내용 및 인근 양돈

농가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해본 결과 15마리에 대한 사슴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을 적용하여 12마리에 대한 피해금액으로 2,413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군용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결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목장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헬기훈련이 시작된 5년 전부터 사슴목장을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슴들이 대체로 헬기소음에 적응한 것으로 판단하

표 13. 건설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주요 분쟁사례

구분	사업장명	주요 피해 요인	가축피해내용
2006	경기 ○○시 철도운영	고속철도운영 소음·진동	젓소 유산, 폐사, 유랑저하, 도태 등
	경남 ○○군 상수도댐	중장비사용	한우 유·사산, 성장지연 등
	경북 고령군 도로공사장	토공사	돼지 폐사, 도태, 유·사산
	전북 ○○군 도로공사	교량및터널굴착발파, 터파기	한우 유·사산, 번식율저하, 성장지연 등
2005	전남 영암군 양식장	교량공사위반 뺑자업	항어 치어 폐사 등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성토, 파일작업	젓소 유·사산, 폐사, 유랑저하 등
	충남 서천군 도로공사장	말뚝, 횡타, 성토, 벌목 등	한우, 돼지 유·조·사산, 수태율 저하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굴삭기, 레미콘, 덤프트럭	중자 타조 폐사, 부상, 산란감소
	울산 울주군 헬기소음	헬기소음(산불진화)	한우 유산
	경북 칠곡군 고속철도	노반자갈포설공사	양계 폐사, 산란율 저하
	부산 강서구 도로공사	타작업(면벽 및 집수정 등), 도로주행소음	젓소 유랑감소, 유·사산, 이전비용 등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장	성토, 가설방음벽 등 설치	젓소 유랑감소, 사산, 도태 등
	경남 사천시 ○○대교	수중발파, 교각공사 등	육계 폐사, 성장지연 등
	전남 담양군 고속도로	파일형타, 노면정지, 가도개설	한우 성장지연, 유·조·사산
	경기 안성시 도로공사	성토, 덤프트럭 교행	애완견 유·사산, 폐사, 산자수 감소
	전남 함평군 골프장	벌목, 발파공사, 중장비 소음	타조 성장율, 산란율 및 부화율 저하
2004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	사슴 및 관상조류, 성장지연, 산란율저하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	토공사	메기 및 미꾸라지, 폐사, 생산량 감소
	전북 고창군 도로공사	덤프트럭교행	미꾸라지 폐사, 성장지연 등
	영천시 도로공사장	암반절취, 성토운반및상차공사	돼지 유산, 폐사, 산자수 감소 등
	○○시 고속철도공사운영	고속철도운영	돼지 유·사산, 성장지연, 폐사 등
	충남 서천군 도로공사장	벌목, 성토 및 터파기 등	돼지 유·사산, 도태 및 폐사 등
	영천시 도로공사장		양봉, 과수, 건물 및 정신적피해
	영덕군 도로공사장		양봉피해
	포천군 도로공사장		가축피해
	예산군 도로공사장		한우 성장지연, 유·사산, 폐사 등

구분	사업장명	주요 피해 요인	가축피해내용
2004	나주시 도로공사장		젓소 및 정신적 피해
	경남 함양군수로공사장		개 피해
2003	옥천군고속철도터널공사	발파, 중장비사용	양어피해
	부안군 용수로 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한우, 사슴피해
	김해시 도로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한우피해
	영천시 도로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토종닭, 오리피해
	화성시 채석장	발파, 중장비사용	한우 유·사산, 성장지연 및 번식을 저하 피해
	칠곡군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양돈피해
	영월군 터널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개, 건물 및 정신적피해
	과산군 고속도로 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양계피해(기각)
	고창군 도로공사장	중장비 사용	양어피해(양역의뢰)
	고흥군 쓰레기 매립지 해양오염 양식장	침출수 및 토사유출	양어피해
	제천시 석회석광산	발파, 중장비사용	양어피해
	부안군 도로공사장	발파	가축, 건물 및 정신적피해
	과산군중부내륙고속도로	발파, 중장비사용	양봉 및 양계피해
	진안군 사방댐 공사장	중장비 사용	양봉, 강아지피해
	가평군 양계장	소음·약취	양계, 정신적피해(방음벽설치 협의)
2002	2002울산시○○공단대기오염	매연, 약취 및 유탄가스	양봉피해
	영천시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가축, 건물 및 정신적피해
	영천시 우회도로	중장비사용	한우 유·사산, 건물 및 정신적피해
2002	포천군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양계 및 정신적피해
	영동고속도로	중장비사용	양돈, 건물 및 정신적피해
	문경시 도로공사	중장비사용	젓소 및 정신적피해
2001	포천군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젓소피해
	문경시 도로공사장	항타기, 착암기, 굴삭기 외	멧돼지 모든 유산
	경주시 금속공장	철가루, 용접가스 및 소음 외	종견, 차량, 나무 및 정신적 피해
	진도군 도로공사장	브레이크, 굴삭기, 덤프트럭 외	타조폐사, 산란을 저하, 부화율감소 외)
2001	천안-병천간 도로공사장	백호우, 펌프카, 덤프트럭 외	칠면조 및 청둥오리 산란율감소, 모든 번식을 저하 등
	포천군 도로공사장	하차, 분쇄 및 다짐작업	돼지 유·사산, 도태 피해
	과산군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공사장	발파, 중장비사용	양봉, 오소리 및 젓소 피해
	청원군 채석장	발파	한우 성장지연, 유·사산 및 번식을저하
	포천군변전소	중장비사용	젓소 및 정신적피해
	여수 공항 확장공사장	중장비사용	돼지 폐사
	안성시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젓소폐사피해
2000	항공학교 헬기훈련	헬기운행소음	사슴 폐사 및 정신적 피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장비	젓소도태, 폐사, 유·사산 및 유량감소
	고령-성산간 도로공사장	천공, 항타공사	가축(돼지, 소, 염소)유·사산
	화성군 종합사격장	총기소음	양계피해(종란 감소, 종계폐사 등)
	평택-이동간 도로공사장	중장비사용	토끼 조·사산 및 폐사
	포천군공장	소음 및 약취	메기피해
	대전시 유성구 공사장	도로포장	관상어 피해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발파, 건설장비사용	돼지 유·사산, 도태피해
1999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발파, 굴삭기, 덤프트럭	돼지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의정부시 ○○택지조성	발파, 브레이커, 덤프트럭	젓소번식효율저하, 유생산량감소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중장비사용	비육우피해
	발안-안산간 도로확장	발파, 브레이커, 덤프트럭	송아지 폐사, 젓소도태, 유생산량감소
	의왕시 도로개설현장	토목공사, 배수공사	송아지 폐사
	시흥시○○동건축공사장	절, 성토공사, 덤프트럭	사슴폐사
1998	충남보령청라우회도로	파일항타, 덤프, 굴삭기	닭 산란율저하, 종계도태 시기단축
	서해안고속(당진-서천)	나무, 표토제거 작업 외	닭 조기도태, 산란을 저하
	김천고동지구택지개발	브레이커 외	번식장애, 유산, 조기도태, 유생산량감소
	양평-용문간도로확장	로울러, 덤프트럭, 크라사	유사산, 산자수감소, 모돈피해, 자돈압사
1997	광영시전력구설치공사	진동함머, 굴삭기, 덤프	폐사, 도태, 유산, 유생산량감소, 임신휴업
1996	서해안고속(안산-안중)	불도저, 로울러, 덤프트럭	육계폐사
	강경구치소신축공사	굴삭기, 착암기, 발파의	임신돈 유산, 공태돈, 자돈피해, 성장지연
	원주시소축산단지조성	공사차량운행	양돈 및 정신적 피해

구분	사업장명	주요 피해 요인	가축피해내용
1996	광명시 전력구 설치공사	중장비사용	젓소 유·사산 및 폐사
1995	연천 채석장직업	발파, 골재운반차량	돼지, 닭의 폐사
1994	고령 채석장현장	발파, 브레이커	모우 도태, 유사산, 폐사, 유생산량감소
	시화지구 토석채취장	발파, 덤프트럭	자돈, 공태돈손실, 도태, 성장지연
1993	제2경인고속(시흥)현장	발파	비육돈 생산차질, 모돈폐기
	창원 현도공단조성공사	발파	양계장, 양어장 : 산란을 저하
1992	용인 지산 골프장	발파, 덤프트럭	종돈폐기, 규격돈 생산차질

註 :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례집(1992~2005)

여 인정하지 않았다.

■ ○○ 공군기지 전투기소음 양돈 피해 배상

○○시 ○○면의 양돈농가 주인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돼지가 유산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전투기 소음으로 19마리의 돼지가 유산한 사실이 인정되어 1,549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투기 이륙 시 증속 후 급상승 및 비행고도를 상향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결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1992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조사된 가축피해 분쟁사례는 총 104건으로 그 중, 젓소가 19건(18.3%)으로 가장 많고, 돼지가 18건(17.3%), 한우 15건(14.4%), 닭 13건(12.5%), 양어 12건(11.5%), 양봉 6건(5.8%), 개 5건(4.8%), 사슴 4건(3.8%), 타조 3건(2.9%), 토끼, 개 및 오리가 각각 2건, 염소, 오소리, 칠면조가 각각 1건이었으며, 총 77건중 소음원별 발생건수를 보면 발파를 포함한 건설관련 소

음원에 의한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 참고)

Ⅶ. 가축피해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사슴, 타조 등 축종별, 품종별 및 피해양상의 소음도에 따른 유산율, 폐사율, 성장지연율 등을 산출한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그 인과관계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전문가가 그간 수많은 환경분쟁현장에의 전문가로서 현지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1. 가축사육농가측

-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 피해시 사진촬영, 기록유지와 공사장 측에 피해사실고지
- 환경분쟁현장에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유발시 저감대책(예 : 가설 방음벽 등)을 요구할 것
- 질병발생(유·조·사산 등), 폐사 및 도태시 진단서 등 발부보관
- 각종 전염병 검진 및 예방접종 철저히 실시

- 평소 사육현황(두수, 분만 및 번식상황, 치료, 예방접종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유지할 것
- 피해사실을 공사장측에 고지하였음에도 보상의지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기보다는 보상관련기관 등에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련 전문가의 조사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평소 약품 및 사료구입, 유대, 매매 및 인공수정증명서 등 각종증명서들을 잘 보관해 둘 것

## 2. 수의사

- 관내 가축사육농가가 환경분쟁으로 인한 가축피해호소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검안서 및 수정 증명서 등)발부시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시만 발부하며, 작성시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가축사육농가에 정기적으로 축군의 건강 및 번식검진하는 수의사는 축군의 개체질병 및 번식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3. 공사장측

- 환경분쟁으로 인한 가축피해 호소시 적극적으로 사실을 인지하려는 자세의 유지가

요구됨

- 가축피해를 호소하는 농가에 대해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태도와 말은 지양할 것
- 가축피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가가 보상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인 피해증거와 서면자료 등을 제출시 검토 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해와 설득의 자세를 항상 견지할 것
-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실천불가능한 언행은 삼갈 것
-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시에는 적극적으로 소음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세의 견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

이상과 같이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여 보았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스스로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발생과 번식기록들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유·사산 등의 질병발생이나 폐사 등의 경우는 수의사의 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환경분쟁에 따른 가축피해의 제반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입수·숙지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